

'84 산업안전보건시책방향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신 석 규

70년대 중반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산업재해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활동의 증대등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83년도에는 전체근로자 800 만명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350 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4 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만도 15 만 7 천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5천9백억원에 달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도 83년에 6 천 3 백여명으로 나타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년평균 15 %이상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증가는 노사 모두의 안전의식결여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재래형 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의 증가와 무분별한 사용이 직업성 질환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84년도에는 노사의 재해예방의식을 높여 재래형 재해를 중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 재해예방사업을 중점지도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재해다발업체의 특별지도를 실시할 것이다.

현재 전국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을 50인이상 7,000여개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고 무재해운동의 실천기법의 하나로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위험예지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업무의 리더양성에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전국의 재해다발 사업장 1,500 개소를 특별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자율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하고 실천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케하고 적출된 미비사항은 조속히 개선토록 강력히 조치하며, 또한 급증하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괄 재해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에 재해예방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안전담당자 2,460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가 건설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건설재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둘째는 안전보건의식을 생활화하도록하고자 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더 먼저 노사의 재해예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재해율이 전체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2,500 개 사업장을 선정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

해 예방강조기간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산업 안전보건대회의 내실을 기하고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전시회등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셋째, 사업주의 자율적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재해예방에 관한 각종지식과 기준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업종별 유해위험분포 조사 및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안전장치 개선지침과 개인보호구 성능 개선방안을 연구 개발 보급하고 각종 직업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부족한 산업안전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급 대학에 산업안전학과와 민간전문단체에 단기양성과정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재해예방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제도를 설정 운영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체에 매년 20억원 시설자금을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줌으로서 사업주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넷째, 근로자 건강진단시 검진누락 및 부실검진을 일소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시하여 온지가 20여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둘러싼 부조리와 일부 의료기관의 부실검진이 일소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근로자들의 정기건강진단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부실검진 및 검진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를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검진누락이나 미 실시 사업장에 대

하여는 법에 의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부실검진예방을 위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은 지역별로 특수검진기관을 지정 책임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년도 검진실적에 대한 정밀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검진실적이 부진하거나 직업병 발견실적이 낮은 의료기관은 관계규정에 의거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하고 검진지역의 조정은 검진기관의 검진실적, 검진대상인원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일반검진의 경우도 시설과 인력, 기계기구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검진과 검진조를 조직하여 부실검진을 자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엑스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기계기구를 상시 갖춘 의료기관을 지방사무소에서 사전 조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의료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당해 사업장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관할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산업보건센터등의 인력이나 시설기계 기구를 계약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섯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작업환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근로자의 건강관리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작업환경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산업보건의 기본방향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사전예방하는 데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작업환경관리가 산업보건업무의 중심업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각 유해인자별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